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- 13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등의 멸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제25조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14일
동 작 구 청 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

도로명주소	폐지 사유	도로명주소 폐지일
동작대로 161	멸실	2019. 2. 11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☎02-820-9070)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(www.dongjak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 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는 새로이 부여하였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- 15호

본동6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204(2004.06.25.)호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, 2006.09.26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되었으나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1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360(2018.11.08.)호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되어 같은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고시합니다.

2019년 2월 14일
동 작 구 청 장

1. 사업종류 : 본동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
3. 면 적 : 13,000m²
4. 추진위원회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 - 가. 명 칭 : 본동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 - 나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0-7번지 (노량진로32길 14-3)
5. 승 인 일 : 2006. 09. 26.
6. 취 소 일 : 2019. 02. 14.
7. 취소사유
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1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되어 동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함
8. 취소에 따른 불복
 -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및 「행정소송법」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당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9. 문의 사항 : 동작구청 도시개발과(☎02-820-9265)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- 198호

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「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수당지급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2월 14일
동 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통장수당 지급일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며, 일 할계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

- (1) ‘조례 제8조제1항’ → ‘조례 제11조제1항’(안 제1조)
- (2) ‘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’ → ‘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’(안 제2조)

나. 통장수당 지급일 변경(안 제3조)

- (1) 매월 15일 지급 → 매월 말일 지급

다. 통장수당 일할계산 세부기준 마련 및 문구 변경(안 제4조)

- (1) 근무일 산정 시 위촉일 및 해촉일을 포함하되, 임기만료자의 해촉일은 임기만료일로 함
- (2) 수당 산정 시 원단위 처리 : 반올림
- (3)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‘일괄’ 지급한다. →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‘일할’ 지급한다.

라. 통장수당 계좌지급에 따른 변경(안 제5조)

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변경(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

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[참조 : 자치행정과,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 47-2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(전화 : 820-9179, FAX : 820-9977, E-mail : lawparkst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훈령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

(<http://www.elis.go.kr/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수당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동작구통장수당지급규정”을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수당 지급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동작구통·반설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.)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서울특별시동작구 통·반설치조례」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수당등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통장으로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수당 등은 「서울특별시동작구 통·반설치조례」 제4조 규정에 따른 통장으로서 「민방위기본법」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매월 15일을 원칙으로 하되 민방위 날에 지급한다.”를 “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, 동 형편에 따라 동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일괄”을 “일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근무일 산정 시 위촉일 및 해촉일을 포함하되, 임기만료자의 해촉일은 임기만료일로 하고, 수당 산정 시 원단위는 반올림 처리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지급방법) 수당은 동장이 지급하며, 통장 본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